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-96호

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

「**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**」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「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」 제4조(지원대상), 제5조(지원범위), 제6조(지원조건), 제7조(지원제외), 제8조(신청접수)에 따라 2019년 3분기 **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**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

1. 접수 개요

○ **(접수사업)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분야)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**

※ 환경산업육성자금(운전), 환경개선자금,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신청접수 미실시

○ **(접수기간) 2019.7.1.(월) ~ 7.5.(금) *심사결과는 2019.7.19.(월) 통보 예정**

※ 마감일 전 접수규모(380억원) 초과 시 기한일 전 조기마감 가능

○ **(접수방법)** 인터넷접수(http://loan.keiti.re.kr) 또는 방문 작성 접수*

※ 방문접수 : 공인인증서와 구비서류를 저장장치(USB, CD 등)에 담아서 내원하여 인터넷접수(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작성방법 안내)

○ **(구비서류)**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서류,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 서류**(첨부2 참조)**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나이스신용정보 사전 동의 시 구비서류 간소화 가능

2. 융자지원 및 조건

○ **(지원대상)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**

※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(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자)은 대기업까지 가능

○ **(지원사업)** ①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

○ **(지원제외)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**

○ **(접수규모) 총 380억원**

<2019년도 3분기 융자신청 접수 규모>

(단위 : 백만원)

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 분야)	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
31,000	7,000

○ **지원조건**

구분	분야	세부분야	대출금리	대출기간	업체당 지원한도액
환경산업 육성자금	시설	시설설치자금	인출시점별 고정금리 (2분기 기준 1.81%)	3년거치 4년상환 (7년 이내)	30억원
		해외시설설치자금			
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	시설	시설설치자금	분기별 변동금리 (2분기 기준 1.81%)	5년거치 10년상환 (15년 이내)	25억원

※ 대출금리 : 분기별 환경부 고시「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」

○ **(지원방식) 간접대출방식** *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

3. 융자심사 주요사항

○ **(심사기간)** 접수마감일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

※ 융자신청 과다 등 또는 융자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

○ **주요 심사내용**

- **(심사순위 결정)** 재무안전성, 사업성장성 등 기업 평가점수 및 가산점 부여 합계 점수로 결정

- **(서류심사)** <u>**신청자격,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**</u> 등 심사
- **(환경관계법 위반)**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
- **(중복지원)** 동일한 신청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또는 승인(추천)된 경우

<융자지원 심사 절차 및 일정>

① 신청 접수 완료	⇨	② 심사순위 결정	⇨	③ 서류적합성검토
2019.7.5.(금)		2019.7.12.(금)		2019.7.16.(화)

④ 환경관계법위반 및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	⇨	⑤ 심사결과 통보
2019.7.18.(목)		2019.7.19.(금)

4. 지원제외 대상

ㅇ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,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**"한계기업"** 해당 사업자 ***첨부3 참조**

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(추천) 받은 사업자

※ 다만, 운전 분야 자금 신청 또는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.

ㅇ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

ㅇ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사업자,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(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해당 없음)

-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
-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목적 외 사용”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ㅇ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, 사기 등 민·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

5. 접수 문의

- ㅇ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분야 : 02-2284-1731)
- ㅇ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(02-2284-1731)

첨부 1.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.

2.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.

3. 한계기업(지원 대상 제외) 기준. 끝.

첨부1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

화면예시	절차
	① 회원가입 -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인인증서 등록 -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,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- 신청서 등록
	④ 정보공개활용, 초과승인 동의
	⑤ 신청서 작성 - 기업규모, 재무정보, 심사수위정보, 융자신청서, 기업현황, 영업현황. 사업계획, 구비서류, 추가의견, 참업기업여부 등

<table>
<tr>
<td> </td>
<td>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
- 자금별필수·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</td>
</tr>
<tr>
<td> </td>
<td>⑦ 초과승인 동의, 성실이행 준수 서약
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</td>
</tr>
</table>

첨부2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

□ 공통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1	• 사업자등록증	
2	• 법인등기부등본	• 법인사업자 필수
3	• 건물/토지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	•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
4	• 재무제표	• 최근 2개년
5	•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	• 최근년도
6	• 심사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인증서, 특허증 등)	

□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

❍ 환경산업육성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환경산업체 입증자료(인증서, 등록증 등)	
시설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건축허가서	• 공장건물 등 신·증축인 경우
	• 현장사진	

❍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	•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	
	•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증	• 지방자치단체 발급
	• 중소기업기준검토표	
	• 중소기업확인서	
	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	
	• 건축, 설비시공, 시설공사 등 계약서	
	• 시설·장비·건축 세부도면	•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
	• 현장사진	

첨부3 한계기업(지원 대상 제외) 기준

※ 한계기업 기준은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.

1. 상(上)한계기업 :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구분	한계기준	산식
수익성	• "재활용산업육성자금"의 경우 직전 매출 300억원 이상 지원제외	•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
재무안정성	• 자산 70억원 이상	•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
	• 부채비율 55%이하	• 부채비율 = $\frac{\text{부채총계}}{\text{자기자본}}$

2. 하(下)한계기업 :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구분	한계기준	산식
재무안정성	•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 50%이상	• 잠식률=$\frac{(\text{자본금}-\text{자기자본})}{\text{자본금}}\times 100$
금융비용 부담정도	•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	• 1 > 이자보상배율=$\frac{\text{영업이익}}{\text{금융비용}}$